

[별첨1]

2024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 안내

1. 2024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24년 8월 30일(금) ~ 9월 20일(금) 18시 (마감 일시 준수) / 22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지역구·전국구)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9월 20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후보자 서류접수)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김금남 차장 (T.070-7099-1721)

나.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 ① 2024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공의원 후보등록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 ③ 공의원 후보추천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2)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참고]

3회 임원선거세칙

제6조(추천 후보자 수 제한) 통상단우 1인은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 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18. 6. 1.>

3.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에 의무이행 사항 확인(지부장 관인 날인)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 ② 지부 규약에 정한 의무금 6회 이상 납부
- ③ 본부·지부·분회가 공식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3회 이상 참석

※ ②, ③번 기준일 : 2023. 8. 1. ~ 2024. 7. 31.

나. 자격제한

- ①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 ② 임원 자격 상실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③ 임원 임기 중 임원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임원의무금(임원회비)은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기준일 2021. 1. 1 ~ 2023. 12. 31)

단, 직전연도 미납 연회비를 익년 2월까지 납부한 경우는 인정함.

- ④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

다. 관련 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2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제3조(공의원 선거권) ① 공의원 선거 공고일 현재의 통상단우는 공의원 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공의원 선거권이 없다.

- 1.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 2. 선거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말일로부터 지난 1년간 본부·지부·분회가 공식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 3. 선거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말일로부터 지난 1년간 지부 규약에 정한 의무금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조의 2(임원 피선거권) ① 임원 선거 공고일 현재의 통상단우는 임원 피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임원 피선거권이 없다.

- 1.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 2. 임원 자격 상실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3. 선거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말일로부터 지난 1년간 본부·지부·분회가 공식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 4. 선거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말일로부터 지난 1년간 지부 규약에 정한 의무금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임원 선거 공고일 기준 이전 3년의 기간중 임원 연회비를 1회 이상 해당연도에 미납한 경우. 단 직전연도 미납 연회비를 익년 2월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로 인정
- 6.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

○ <단우 관리 규정>

제13조(의무면제 단우) ① 단우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지부에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지부 임원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③ 의무면제 단우가 활동 재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의무금 납부 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지부는 의무면제 단우에게 의무면제 해제 통보서를 발부하며, 의무면제 단우는 각종 권리가 회복된다.

제13조의2(단우 권리의 제한) ① 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2년 이상 약법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우는 지부 임원회의의 결의로 약법 제19조에 명시된 단우의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단우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지부는 해당 단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의3(단우 권리의 회복) ① 권리가 제한된 단우가 복권을 하고자 할 경우 지부 사무처에 복권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지부는 복권신청을 하고 3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한 단우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이를 즉시 통지한다.

공의원 임무와 권한

□ 임기 : 3년 (2024. 12. 1. ~ 2027. 11. 30.)

□ 약법

제9조(공의회) ① 공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의회 의장,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2. 공의회 의장, 이사장, 공의원, 이사, 감사 해임
3. 약법의 개정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심의·의결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 3회 운영 규정

제10조(임원 해임) ① 공의회 의장, 공의원,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중에서 그 직무에 태만하고, 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때는 공의회 운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의회에 해임을 제청할 수 있으며, 공의회는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임원 해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 공의원 의무사항 : 임원의무금(임원회비) 납부(2024년 기준 : 연 40만원)

끝.